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선거법 관련 조항의 일시 유예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뉴욕주는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총선거를 이끌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Sandy가 뉴욕주에 치명타를 가해 사상자를 내고, 수많은 가택 및 사업체를 파손시키고, 수 천명의 뉴욕 주민들이 집을 잃고, 교통 대란을 일으키고, 상업과 일상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Sandy의 희생자가 된 뉴욕 주민들은 투표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뉴욕주는 이러한 엄청난 허리케인 피해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게 놔두어서는 안 되고, 허리케인 Sandy로 피해를 입고 집을 잃은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거주 등록 유권자들의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투표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무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나,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행정법 2-B조항 섹션 29-a에 의해,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이나 규정, 또는 부분의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면 그 조항을 임시로 보류, 변경 또는 수정할 권한에 따라, 이로써 이 행정 명령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앞으로 통지될 때까지 다음의 법안을 임시로 보류, 변경 또는 수정합니다:

임시투표용지로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중 한 곳 또는 뉴욕시 내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유권자가 임시투표용지를 사용하려는 선거구에 정당하게 등록된 자임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거법 제8-302조가 임시로 보류, 변경 및 수정되었습니다.

유권자가 거주하는 선거 구역의 다른 임시투표지와 부재자 투표지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뉴욕주의 모든 선거위원회가 연방 재난 선포 카운티 중 한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임시투표지 또는 잠정투표지를 유권자 등록을 한 선거위원회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제9-209조가 임시로 보류 및 수정되었습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관계 없이 유권자가 자신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 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유권자가 투표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권자가 거주하는 선거위원회가 해당 투표를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제9-209조의 (a), (iii)이 임시로 보류, 변경 및 수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주 선거위원회는 필요한 카운티 선거위원회를 포함해 본 행정명령의 적절한 이행에 관해 카운티 선거위원회에게 즉시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 투표소 관계자들에게 임시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안내를 해주도록 지시한다.
2. 본 행정명령에 따라 유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와 지침을 제공한다: (a) Nassau, Rockland, Suffolk 또는 Westchester 카운티, 또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뉴욕주 어느 투표소에서든 임시투표용지를 받아서 작성할 수 있다, (b) 유권자의 투표는 대통령 및 미상원 사무소에 중요하며, 또한 유권자의 거주 지역의 공식 투표지에 표시된 국민발의뿐 아니라 다른 선출직 후보와 지역구 후보에게도 중요하다.

본 행정명령과 그 내용에 대한 공지문은 주 선거위원회가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선거위원회가 최소 모든 투표소에서 그리고 해당 위원회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012년 11월 5일 Albany

시에서 주 옥새 및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